

# 이란 핵문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노승재 ·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I. 머리말	IV.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타 요소
II. 이란의 핵개발 경위와 최근 동향	V. 전 망
III. 이해당사자들이 입장과 최근 동향	

## I. 머리말

이란의 핵 개발 문제의 향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체제단체가 이란 내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폭로한 2002년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을 중심으로 한 EU와 이란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sup>1)</sup>를 통해 협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sup>2)</sup>의 가맹국으로서 IAEA 헌장에 명시된 평화적 핵 이용권의 보장과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우

려하여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2005년 6월 강경보수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핵변환 활동을 일방적으로 재개하고 서방측은 UN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대립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다행히 금년 11월에 개최된 IAEA 이사회가 이란 내의 우라늄변환 작업은 허용하되 우라늄 농축작업을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러시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란도 이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일단 파국을 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의 핵 이용권을 제한하여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반면, 이란은 이에 반발하여 유사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군사적 사용금지를 목표로 1956년 10월에 80개 UN 회원국이 설립헌장에 서명하였고, 1957년 7월 헌장이 발효되어 UN총회 산하기구로 발족하였음. NPT 제3조에 의거하여 핵사찰 대행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으며 회원국은 2004년 11월 현재 138개국임.  
 2)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사용을 규제, 감시하기 위하여 UN에서 1968년에 채택되어 1970년에 발효한 국제조약으로서 참여국은 2005년 7월 현재 188개국임. IAEA는 매년 UN 총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UN 안보리에도 보고함.

시 석유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2의 산유국이자 중동지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이란 핵문제의 향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이하에서는 이란 핵문제의 발생 경위, 최근의 진행상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란의 핵개발 경위와 최근 동향

### 1. 이란의 핵개발 경위

이란의 핵 개발은 1960년대 미국의 후원으로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1967년에 이란 원자력기구(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는 미국에서 5MW급 연구용 원자로를 공급받아 테헤란핵연구소(Teheran Nuclear Research Center)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이어 이란은 1968년에 NPT에 가입(1970. 3. 5자 발효)하였으며, 팔레비(Mohammad Reza Shah Pahlavi) 전 국왕은 원유고갈에 대비하여

200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3개소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5년에는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약 6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장비를 이란에 판매하는 미·이란 핵협정(U.S.-Iran Nuclear Cooperation)에 서명하였고, 1976년에 포드 대통령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미국산 재처리시설을 테헤란에 공급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이란에 원자력이 도입되면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 원유 여유분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산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이란은 독일의 Kraft-Union A.G.<sup>3)</sup>와 총규모 40억~60억 달러의 Bushere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2개의 경수로 설치 포함)을 체결하였으나, 1981년 완공을 목표로 1974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1979년 7월에 Kraft-Union A.G.가 철수함으로써 중단되었다.<sup>4)</sup> 1990년에 이란은 대이라크 전쟁(1980~88년)으로 중단되었던 핵 프로그램의 재개를 추진하였으나,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조치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1992년에 이란은 중국과 Darkhovin에 2대의 950MW급 원자로 건설계약을 체결하였고<sup>5)</sup>, 1995년에는 러시아(Ministry of Atomic Energy)와 Bushere 원자력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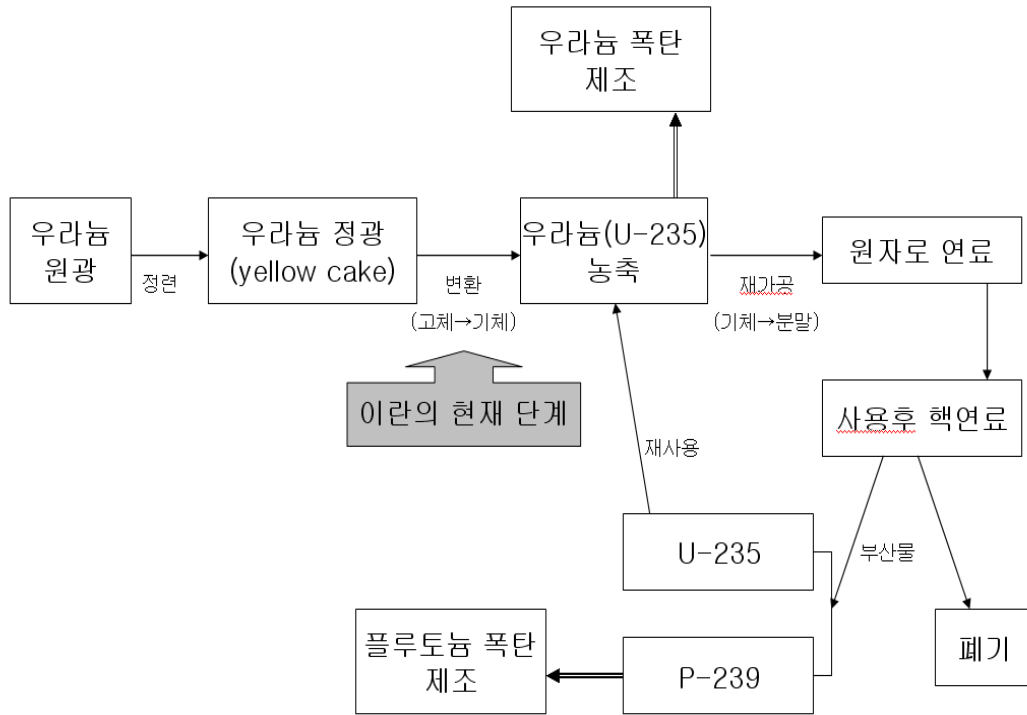
3) Siemens A.G.와 A.A.G. Telefunken의 합작기업임.

4) 1979년 1월 현재 2개 원자로의 공정률은 각각 85%, 15%이었음. Kraft-Union A.G.는 4억 5,000만 달러의 미수금 발생을 철수 원인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1979년 회교혁명으로 기존의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고 이란의 대서방 관계가 위기를 맞게 된 것에 기인한 것이었음. 한편, 1984년 4월 미국 국무부는 Bushere 원자력발전소 완공에 2~3년이 소요될 것이고, 경수로는 핵무기 개발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란이 원자로에서 사용한 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여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

5) 실제 공사는 착수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림〉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

##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



소 재건계약(8억 달러 규모)에 서명하였다. 러시아는 동 사업에 대해 원자로가 민수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NPT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002년에 이란의 반국가 게릴라단체(MKO)가 Natanz의 우라늄 농축시설, Arak의 중수생산시설 등 이란에 소재한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폭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 2. 핵협상 경위

2003년 2월 이란은 일부 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IAEA에 사찰을 자원하였다. IAEA는 3차례의 사찰실시 결과, 2003년 9월에 IAEA 추가의정서<sup>6)</sup>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체결, 비준, 이행을 요구하는 대이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sup>7)</sup> 당시 미국은 이 문제의 UN 안보리 회부를 추진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6) IAEA가 회원국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도 핵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7) 2003년 6월 IAEA 사무총장 Mohamed ElBaradei는 이란이 수 개의 핵물질과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각국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IAEA는 이란이 NPT를 위반하였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음.

<p><b>&lt; EU측 포괄제안서(2005. 8. 8자)의 주요 내용 &gt;</b></p>
<p><b>【핵 관련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NPT와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이란의 권리는 인정, 핵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권한은 불허<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핵연료는 해외에서 조달하며, 사용 후에는 공급국으로 반출</li><li>○ 핵무기 생산이 어려운 경수로 핵발전소의 건설은 허용하나 핵무기제조가 용이한 중수로 핵발전소의 건설은 불허</li><li>○ 연구용 원자로 등 민간용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li><li>○ NPT 탈퇴금지 및 IAEA의 불시 사찰 수용</li><li>○ 우라늄 변환을 포함하여 핵농축 활동 재개 시에는 IAEA에 회부</li></ul></li></ul>
<p><b>【경제적 인센티브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란 측이 제안 수용시 정치·안보·경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토 보존 및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위협 또는 무력 사용 금지</li><li>○ 이란의 테러 및 마약퇴치 활동 지원</li><li>○ EU·이란 무역협력 협정 체결</li><li>○ 중앙아시아 송유관의 이란 경유 허용</li><li>○ WTO 가입 지원</li><li>○ 교역,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li></ul></li></ul>

에 이란은 2003년 10월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활동의 중단(suspension)을 발표하고 11월에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IAEA는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언하였고, 미국은 ‘믿을 수 없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과 8개월 후인 2004년 6월 이란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전년의 협상을 파기하고 Natanz에서 IAEA가 우라늄 원심분리기에 부착한 봉인을 제거하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건설을 재개하

자, 7월에 세계 주요 언론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발전소 공격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sup>8)</sup>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IAEA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하였고, 10월에는 이란이 농축활동을 영원히 종결하는 대가로 EU가 이란에 민간 핵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EU 3국은 11월에 이란과 무역 등 협력관계 논의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WTO 가입 신청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란은 핵 활동

8)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 시설을 공격한 바 있음.

을 다시 중단하였다.<sup>9)</sup>

2005년에는 5월에 개최된 이란·EU 장관급 회담의 합의내용에 따라 EU가 8월 5일자로 '제한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 제안서(Framework for a Longterm Agreement)'를 제시하였으나, 이란은 이를 즉각 거부하고 Isfahan의 우라늄 변환시설의 가동을 재개하였다. 이에 8월 11일 IAEA의 35개 이사국은 이란이 우라늄 변환을 중지하고 사무총장이 2005년 9월 3일까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무총장이 IAEA에 제출한 이란 핵문제에 대한 사찰보고서(2005. 9. 2)는 NPT에 대한 이란의 새로운 위반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하였으며, 기존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이란에 전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Isfahan에서 우라늄 변환작업(8월 이후 6.8톤)이 이루어졌으나 우라늄 농축에는 착수하지 않았고, IAEA가 매일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Natanz의 시험 우라늄농축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1987년~90년대 중반에 이란의 핵관련 계약체결, 기술, 장비 습득과정의 일관성에 대해 자료 부족 등 의혹이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의심되

는 일부 기지(Lavisan-Shian의 물리학 연구소 등)에 대한 핵사찰 등에 이란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9월 19일 개최된 IAEA 정기이사회는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을 마련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이란에 ①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감시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및 투명성 확보조치 이행, ②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의 전면 중단, ③ (플루토늄 생산도 가능한) 중수로 연구용 원자로 건설 중단, ④ (핵 활동 중단과 관련한) 약속 이행 및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 등이었으며, IAEA 사무총장이 차기 이사회에 핵문제 관련 보고를 한 후 UN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동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는데, 3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기권하였다<sup>10)</sup>. EU의 제안에 강력히 반대하였던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하였으며 한국은 찬성하였다.

11월 25~26일 개최된 IAEA 이사회는 러시아가 제시한 중재안 즉 IAEA의 사찰하에 이란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라늄 변환작업은 허용하되 변환된 우라늄은 러시아로 보내 농축하는 방안을 '의장 성명' 형식으로 채택하였다.<sup>11)</sup> 이는 이란 내에서의 우라늄

9) 핵 활동의 중단에 대하여 이란은 자발적(voluntary)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IAEA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EU 등 서방국가들은 동 조치가 양자간 신뢰의 문제로 협상재개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10) 표결 결과는 찬성 22개국(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에쿠아돌, 프랑스, 독일, 가나,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미국), 기권 12개국(에멘, 알제리, 브라질, 중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러시아, 파키스탄, 남아공, 스리랑카, 튀니지, 베트남), 반대 1개국(베네수엘라)이었음.  
11) IAEA 이사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안보리 회부, 차기 이사회로 유보, 의장 성명(Chairman's Statement), 의장 요약보고(Chairman's Summary) 등을 채택함. 의장 성명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그 결과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정치적 구속력이 없는 반면, 의장 요약은 단순

농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EU와 미국 등의 의지와 이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러시아, 중국 등의 입장이 조율된 결과로 알려지고 있으며 UN 안보리 회부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란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지난 8월 이란의 우라늄 전환작업 재개로 중단되었던 핵 협상이 이르면 금년 12월 초에 EU 3국과 러시아, 이란이 참여하는 가운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Ⅲ.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최근 동향

#### 1. 이란

이란은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증가와 빠른 산업화를 내세운다.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배증하였고<sup>12)</sup>, 가솔린과 전기를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는 연소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데다 결국 고갈될 것이므로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원유는 발전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 내용이다.

핵 활동과 관련하여 이란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NPT 하에서 가입국은 평화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금년 8월 이란의 핵 활동 재개 시에도 Isfahan 우라늄 전환시설에 대한 IAEA의 봉인철거 작업은 IAEA가 감시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뒤에 이루어지는 등 제반 핵 활동이 IAEA의 사찰 하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 NPT를 위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바 없는 점도 이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란은 NPT의 본래 목적이 세계적인 핵 비무장임을 고려할 때, 서방국가들이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개발한<sup>13)</sup>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NPT에 가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자국이 차별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항변한다.

특히 보수파 정권의 출범 이후 이란은 대내적으로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유사시 석유자원의 무기화 등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란의 주장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05년 9월 IAEA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에 참석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이란 대통령은 핵 이용권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즉, 핵무기의 확보의지를 강조하고, 핵 농축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과의 협력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남아공 등을 언급하며 핵

히 회의결과를 요약하는 수준의 문서로 의장 성명과 달리 의장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음.

12) 전체 인구 중 25세 이하 인구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높음.

13) 이스라엘은 1968년,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임.

협상 참여국가의 확대를 희망하고 핵 보유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이중기준 적용을 비난하였다. 2005년 10월 26일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시온주의 없는 세계(World Without Zionism)'를 주제로 한 집회의 연설에서 이란 혁명지도자 고 호메이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져야 한다(Israel should be wiped off the map)'고 말했다. 이에 영국은 자국주재 이란대사를 소환한 바 있으며 EU 정상들은 10월 27일 영국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성명을 통하여 이를 강한 어조로 규탄한 바 있다. 이란은 11월 초에 Isfahan에서 조만간 우라늄 변환을 재개할 것이며,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Parchin 군사시설<sup>14)</sup>에 대한 IAEA 사찰단의 방문 및 조사를 허용할 것임을 IAEA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으나 핵사찰에는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란 의회는 자국의 핵 프로그램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공정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1월 3일에 승인하였고, 핵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Natanz에 건립될 최초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소요될 10억 달러 중 3.5억 달러의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20일 이란 의회는 핵문제가

UN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의회가 정부에 UN의 핵사찰을 거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유사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라늄 농축의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이란 정부가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금년 9월 IAEA 표결 당시 찬성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의회는 정부 앞으로 IAEA 결의안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국가들과의 교역·경제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이란 상무부는 10월 17일자로 IAEA 결의안 찬성국 22개국 중 한국, 영국, 아르헨티나, 체코 등 4개국에 대해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수입허가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은 10월 중순부터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승인 보류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sup>15)</sup>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작년에도 IAEA 이란 핵 결의안을 주도한 호주와 캐나다에 대해 비공식 금수조치를 취하였으나 1~2개월 후 이를 해제하였다. 또한, 이란은 11월 7일 축구경기에 대한 한국 기업의 후원을 금지시켰고<sup>16)</sup> 11월 21일에는 국가안보최고회의(SNSC)가 언론계에 대해 한국 기업의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구두로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 미국과 EU가 핵무기 관련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곳으로, 2005년 1월에 IAEA 사찰단이 조사한 바 있으나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15) 수입의 전면금지보다는 수입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보다 매우 길어지는 것으로 최근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해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6) 이란축구협회는 스포츠행사의 주요 후원사인 LG와 FIFA 주관으로 11. 11~13일 4개국 토너먼트를 개최할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의 주요 내용〉
<p>- 국적에 관계없이 어떤 기업이라도 이란의 원유·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연간 20백만 달러(법제정 당시에는 40백만 달러이었으나 후에 축소되었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아래 중 2개 이상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여야 하고, 제재를 받은 제3국 기업이 재차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이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재기업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허가 거부</li><li>2) 제재기업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과 관련한 미국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 보험, 신용한도 공여 금지</li><li>3) 제재기업에 대한 미국금융기관의 대출 제한(12개월 내에 10백만 달러 범위 이내)</li><li>4) 미국 연준위(FRB)는 이란 내의 원유개발을 지원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기체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대리인(agent) 또는 미 정부 기금의 예치대상으로 지정 금지</li></ol> <p>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인해 제재를 유예(waive)할 수 있고, 해당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설득하는 기간 중에는 제재를 연기할 권한이 있음.</p>

## 2. 미국

미국은 1979년 11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질사건 발생으로 국교를 단절하였고, 1996년 이후에는 이란·리비아 제재법(Iran-Libya Sanctions Act: ILSA)을 시행하고 있고<sup>17)</sup>, 2002년 1월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는 등 대이란 강경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미국은 연료부족을 원자력의 보유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이란에 대해 ‘원자력에 비해 원유가 생산가격이 낮으므로 원유와 천연가

스가 풍부한 이란은 원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의 지정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sup>18)</sup> 더구나 이란이 추진하는 원자력의 형태가 발전용, 핵무기 제조용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의 1960년대 핵무기 개발 당시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이란이 오랜 기간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고 개발하여 왔던 전력이 있는데다 단지 연료용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핵무기 개발의도를 의심

예정이었으나, 부통령이 이끄는 스포츠위원회가 11월 7일 축구협회에 한국기업을 후원사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7) 이에 세계 각국은 반발하였으며 특히 EU는 미국을 WTO 중재에 회부하고 EU 기업이 제재를 당한다면 보복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미국은 동 법을 실행한 사례가 없으며 수차례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음. 동법이 사실상 효력이 없게 되자 5년 시효가 종료되는 2001년 8월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의회는 시효의 5년 연장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 국제적인 반대로 동법의 효과 발생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

18) 미국은 중동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를 가장 꺼리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1951년 모하메드 모사데크 총리 정권이 석유사업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2년 만에 미국이 배후지원한 쿠데타로 실각하고 친미 팔레비 왕정이 들어선 사례가 있음.



하고 있다. 이란과의 오랜 악연에 덧붙여 미국은 이란이 전세계의 주요한 테러지원국의 하나로서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보다 더욱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이슈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정책방향이 다소 수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2월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공격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3월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란이 핵 활동을 포기(give up)하는 것을 조건으로 10여 년 동안 지속해 왔던 이란의 WTO 가입 저지정책을 철회하고 민간항공기용 부품의 구입도 허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EU의 정책에 묵시적이거나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 3. EU 등

EU는 UN안보리 회부를 주장하는 미국과는 달리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을 내세워 핵문제를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이 최종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EU는 UN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표명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의 결렬은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EU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비준 반대로 인한 내부 위기를 이란과의 핵협상 타

결을 계기로 타개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외적으로 실추된 EU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EU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이 주장하는 무력, 제재, 보이콧 등의 강경책보다는 타협과 대화라는 자신들의 방법이 결과적으로 옳은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이란에 경제·정치·외교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IAEA 이사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동맹 비핵국들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은 모든 회원국의 기본 권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란의 입장을 옹호하며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과의 경제관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3년 3월 이란으로부터 25년에 걸쳐 1억 1,000만 톤의 LNG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2004년 10월에는 2억 5,000만 톤의 LNG와 함께 일 15만 배럴의 원유를 25년 동안 수입하기로 계약하였다. 러시아는 2005년 2월에 8억 달러 규모의 중수로 건설과 핵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지원에 개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란 핵문제가 향후 UN 안보리에 회부된다 해도 상임이사국인 이 두 나라가 제재에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도는 금년 9월의 IAEA 이사회에서 예상을 뒤엎고 대이란 결의안에 찬성하였

는데<sup>19)</sup> 11월의 이사회를 앞두고 만약 IAEA가 대이란 결의안의 강도를 높인다면 이를 반대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9월 이후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였다는 국내 좌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인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당시 결의안 찬성국들과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IV.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타 요소

### 1. 이란의 권력구조

이란에서는 2004년 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파가 압승<sup>20)</sup>한데 이어 금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강경보수파인 아흐마디네자드가 당선<sup>21)</sup>됨으로써 보수파가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이란 헌법은 이슬람법(sharia)을 기초로 한 신정(神政)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보유한 국가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를 정점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으며, 독특한 형태의 헌법수호기관인 최고지도자운영회의(The Assembly of Experts), 국정조정회의(The Expediency Council), 헌법수호위원회(The Guardian

Council of Constitution)가 있다.

국가최고지도자는 최고지도자운영회의에서 선출되는 종신직으로서 국가 최고정책의 집행 감독, 대통령의 인준·해임권, 대법원장 해임권,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임명권, 군통수권, 입법·사법·행정부간 조정권 등을 보유하는 국가, 정치, 종교의 최고 권력자이다. 입법기관인 의회(Majlis)는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는 2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하원의 역할을, 이슬람 성직자(6명)와 율법학자(6명)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가 의회를 통과한 입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 등을 통해 상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그리고 국정조정회의가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의 중재를 담당하는데 전직 대통령인 라프산자니(Ali Akbar Hashemi Rafsanjani)가 의장으로서 주로 헌법수호위원회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고지도자운영회의는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선출이 주요 임무이며,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최근 이란 의회는 대내외 정치·경제적 개혁성과가 미흡함을 이유로 대통령에 대해 석유부장관 인준 지연 등으로 압박하고 있고 권력구조상 사실상의 국정 현안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최고지도자가 핵문제 해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내외

19)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자국의 이미지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핵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임.

20) 총 290개 의석 중 보수파가 195석을 차지하였으며 개혁파는 50석에 불과하였음

21) 서방국가들은 온건보수파인 전직 대통령 라프산자니(Ali Akbar Hashemi Rafsanjani)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라프산자니는 6월17일의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1%로 아흐마디네자드(19.25%)를 앞섰으나 6월24일의 결선투표에서는 61.9%의 득표율을 기록한 아흐마디네자드에게 패배하였음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2. IAEA의 활동과 NPT의 한계

IAEA는 UN의 산하기구로서 UN 안보리의 위임을 받아 NPT 서명국들의 NPT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실행기관으로서 필요시 핵사찰을 실시한다.

총 11조로 구성된 NP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핵무기 기술을 타국에 이전하지 않으며 비핵보유국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 둘째, 핵보유국은 핵무기 규모를 축소하여야 하며(서문 및 제6조),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제1조). 그러나 핵무기 축소는 최근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선제공격 등 위협적인 행동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획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NPT 서명국들은 잠재적 위협 등 자국이 특별한 사건(extraordinary events)이라고 느끼는 경우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제10조). 셋째, 핵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4조)<sup>22)</sup>. 이는 핵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연료의 보유를 희망하는 것을 반영하되 핵무기의 개발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연료용으로 우라늄의 농축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의 직전 단계

로서 정치적 의지가 있는 국가라면 비밀스럽게 또는 NPT를 탈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어 NPT 체제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El Baradei IAEA 사무총장은 약 40개국이 필요하다면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핵무기 비보유국은 NPT 제3조에 따라 IAEA와 평화적 핵 이용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비핵보유국이 핵물질(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생산, 처리,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원자력 발전소,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 시설 등)를 대상으로 항목의 존재, 수량 및 사용에 관해 IAEA에 보고하고, IAEA가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재고감시, 봉인,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협정 위반국에 대해서는 IAEA 자체적으로 또는 UN 안보리를 통하여 제재할 수 있다. 자체 제재는 회원자격 중지, 원자력기술지원 중단, IAEA가 제공·지원한 모든 물질과 장비의 반환 요구 등이며, UN 안보리 제재는 IAEA가 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하여 회부하는 경우 대상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IAEA의 안전협정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제도는 이라크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후 기존 안전협정 체제 하에서

22)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inalienable right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conformity with Article I and II of this Treaty.

IAEA 사찰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되었다. IAEA의 사찰은 NPT 가입국에 한정하여 신고한 물질과 시설의 약정된 장소에 대하여 대상국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UN제재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고누락 및 은닉시설에 대한 강제사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추가의 정서는 핵무기에 관련된 모든 시설, 장비, 물질의 정보접근 및 조기 통보에 의한 사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IAEA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의 확대, 사찰·검색대상 시설의 확대, 사찰통보기한의 단축(48시간~1일 → 24시간~2시간), 의혹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샘플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즉, 알려진 핵 물질과 활동에 중점을 둔 양적인 사찰에서 한 국가의 포괄적인 핵 활동에 대한 질적인 파악으로 전환한 것이다. 2005년 10월 18일 현재 추가의정서에 대한 IAEA 이사회 승인을 받은 국가는 총 113개국이며, 이 중 서명국은 104개국, 비준국은 69개국이다. 이란은 2003년 12월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2004년 2월에 비준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IAEA, NPT, 추가의정서 등 핵 확산 방지, 군축 및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일련의 체제는 자체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NPT는 아일랜드가 조약을 발의할 당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의 핵 보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보유국은 군축의무가 강제조항이 아니며 IAEA의 사찰대상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다. IAEA의 회원국 사찰은 핵의 수평적 확산(비핵보유국의 핵 보유)만 견제할 뿐, 수직적 확산(핵보유국의 핵무기 증가와 핵실험 등)에는 별다른 활동을 취하지 않는다.<sup>23)</sup>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NPT 비가입국의 핵 확산에 대해서는 통제력이 전무하여 유사시 가입국의 NPT 탈퇴의 구실을 제공한다. NPT 제10조 2항은 가입국에게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3개월 전에 가입국과 UN 안보리에 통보하고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sup>24)</sup>, 동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당사국의 주관에 따르게 되어 있어 북한이 동 조항에 의거하여 NPT를 탈퇴한 바 있다.

또한, 핵사찰에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핵 보유의 목적이 평화적 또는 군사적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기술적 감시도 어려우며, 제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강대국에 의한 자의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이 인도, 이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3)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BT)의 발효, 핵무기 제조물질의 생산금지조약 마련에 반대하는 미국에 별다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

24)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 V. 전 망

이란의 핵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나 결국 이란이 제한된 범위의 핵 주권을 확보하면서 EU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5년 초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란의 권리를 인정할 것임을 밝혔고, 이란은 핵무기 수준 이하의 일정 규모 우라늄 농축활동이 인정된다면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과 현실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EU의 움직임에 동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보수파 정권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취임 이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이 가시화되고 중동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sup>25)</sup> 대통령의 거침없는 반미 발언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 후 반미감정이 극대화된 이슬람 저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간 꺾여왔던 아랍국과의 관계나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지역 패권주의국가들과의 밀착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sup>26)</sup> 이란은 이미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를 경험하여 UN 안보리를 통한 추가적인 제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회가 대통령을 압박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강제하고 있다.<sup>27)</sup>

대통령이 회교혁명의 이상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부문에서 자유를 구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Ayatollah Sayed Ali Khamenei)는 정적을 완전히 축출할 경우 이들이 기존 체제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보수파의 국정 장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란은 석유를 무기화해 핵 주권을 확보하면서 중동의 맹주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핵개발의 목적이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필요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이미 1996년부터 원유·무역제재를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마땅한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대통령 선거 결과 개혁파가 약화되어 개혁세력 지원을 통한 이란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어려

25) 의회는 최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빈곤가구가 국영기업 주식을 할당한 후 20년에 걸쳐 장기 상환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음. 이는 외국기업들의 에너지 개발참여를 제한하고 오일달러를 환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란의 저소득층 인구는 공식적으로 총인구의 15%이나 사실상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26) 러시아, 중국, 인도는 물론 미국과 적대관계인 시리아에도 원유를 공급하고 1980년대에 오랜 전쟁을 벌였던 이라크와의 관계도 급속히 밀착되고 있음.

27) 이란 의회는 8. 24자로 대통령이 지명, 제출한 21명의 각료 명단 중 4명(석유, 교육, 협력, 복지 및 사회보장부 장관)에 대한 인준을 보류한 바 있고, 특히 관심의 대상인 석유부장관에 대해 11월 28일 현재 3차례에 걸쳐 인준을 거부하고 있음. 의회는 대통령을 소환하여 핵문제의 해결실패, 이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 대이스라엘 강경발언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물의 야기 등을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간 내림세를 지속하던 주가는 IAEA 표결 이후 10월 31일자로 10,000 포인트가 붕괴되었고 일부에서는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8,000 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운 실정이다. 핵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한다 해도 EU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란은 중동지역 강대국의 하나로 유럽과 경제 등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EU가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핵문제는 북한이나 리비아와 달리 전격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식량난, 에너지난이 겹친 북한과 달리 자원대국인 이란의 핵 포기를 유도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마땅하지 않다. 강경책을 채택하기도 어렵다. 이란은 이슬람권 친미독재국가와는 달리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고 북한과 달리 NPT를 위반하지 않고 조약에 보장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찾겠다는 이란의 준법투쟁에 대해선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UN이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도 현실적 구속력이 없고 오히려 갈등이 지속되면서 유가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금년 초부터 나타난 미국의 대이란 정책방향의 변화 움직임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sup>28)</sup> 미국은 지난 10월의 이사회에서 안보리 회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다가 결국 문구를 수정하여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그쳤는데, 과거 이라크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의혹 제기→안보리 회부→UN 사찰→전쟁 명분 축적이라는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NPT 비회원국이자 핵보유국인

인도와 핵에너지 협력협정을 맺은 후, 이란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 이용을 허용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불용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접근을 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북한은 경제자활능력을 상실하고 핵 이외의 대항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을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경제적 자활이 가능하고 석유무기화 등 대항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핵개발은 반대급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체 핵기술 보유 및 핵연료 자급기반 구축이 목적이다. 따라서 서방측 입장에서 이란 문제는 훨씬 다루기 어려우나 리비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란 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AEA도 이사국 간의 의견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자체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년 8월에 이란의 핵 활동 중단을 촉구할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35개 이사국이 UN안보리 회부의 발판으로 평가된 9월의 대이란 결의안 채택은 통상적인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이루어졌고, 12개국 이 기권함으로써 서방국가와 여타 국가들 간의 분열상을 노출시켰다.

또한, 200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IAEA와 IAEA 사무총장이 선정된 것에 대해 노벨위원회가 핵의 비확산과 외교적 해법에

28) EIU(2005. 9 updater)는 미국의 입장에서 선택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① 핵시설에 대한 군사행동, ②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서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 ③ 이란의 핵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이 중 제3안이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예상하였음.

〈표 3〉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비교

	이 란	북 한
대미 외교관계	1979년 회교혁명 후 단교	미수교
NPT	회원국	2003년 1월에 탈퇴
IAEA 가입	회원국	1974년 가입, 1994년 9월 탈퇴
IAEA와의 관계	사찰단 입회 하에 핵 활동	사찰단 일단 추방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농축우라 늄 개발, 사찰단 추방 후 핵개발 가속화)
핵무기 보유 현황	5~10년 내에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으 로 추정	2005년 핵보유 선언 (9개 이상 보유 추정)
미국의 협상태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에 위임	6자 회담 통한 다자해결 추구
핵협상 쟁점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평화적 핵이용권 허 용, 경제협력, 안전보장, WTO 가입 지원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모두 폐기, 평화적 핵이용 불가,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다자안보 제공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즉, 핵 비확산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 외교적 해법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lbaradei 사무총장은 핵문제의 해결에서 ‘사찰과 검증’, ‘외교적 해결’ 원칙을 고수하여,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핵무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과 갈등을 노출한 바 있다.<sup>29)</sup>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6자 회담의 형태를 이란 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0)</sup>. IAEA가 협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란과 EU는 NPT 틀 안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항상 언급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UN안보리

회부가 성사되기 어렵고 회부된다 해도 제재 채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조치는 상당한 희생을 수반하게 되고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이란과 관련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결국 이란의 핵 문제는 금년 11월에 IAEA를 통하여 제시된 러시아의 중재안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란과 EU의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재안은 핵주권을 주장하는 이란과 핵 활동 포기를 주장하는 서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절충안으로서 서로에게 적당한 타협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란은 이를 수용하는 경우 지난 8월 EU의 포괄제안서에 포함되었던 것과 같은 경제 등 각종 인센티브의

29) Elbaradei 사무총장은 1997년 이래 임기 4년의 총장직을 3기 연임하고 있는데 2001년 재선 이후 이라크 문제와 이란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는 2005년의 총장 3선을 앞두고 반대 로비를 펼친 바 있으나 IAEA 이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미국도 IAEA의 이란 사찰이 철저했고 미국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임.

30) 2005. 9. 27 매일경제신문.

---

제공을 요구할 것이며, EU와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이 우라늄 변환에 한정되고 우라늄 농축 등 추가적인 핵 활동을 일체 포기한다는 객관적인 보장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핵협상의 원만한 타결은 이란과 미국의 양국 대통령이 공히 정치적

으로 국내에서 다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평화정착과 세계 원유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진행절차와 향방이 주목된다. 



〈참 고 문 헌〉

1.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5. 8.
2. \_\_\_\_\_, 이란 주재원 보고서. 2005.
3. 외교통상부, 이란 개황. 2001.
4. [www.bbc.co.uk](http://www.bbc.co.uk)
5. [www.eiu.com](http://www.eiu.com)
6. [www.iaea.org](http://www.iaea.org)
7. [www.iranmania.com](http://www.iranmania.com)
8. [www.kiep.go.kr](http://www.kiep.go.kr)
9. [www.un.org](http://www.un.org)
10. [www.yonhapnews.net](http://www.yonhapnews.net)